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톤증장기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투자신탁 삭제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3. <u>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4. <u>트러스톤 밸류웨이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5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6. <u>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 7. <u>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0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2. (호변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 <u>3. (호변 변경)</u>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	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</u>